



국가인권위원회공보

국가인권위원회

2020년 6월 15일

제 18권 제 3호

알 립

-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(진정인, 피해자, 피진정인)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, 소속기관,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,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humanrights.go.kr>)에 게재되고 있으므로,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목 차 -

공 지 사 항

1	인사발령 등	432
2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	436
3	진정접수 · 상담 · 민원 · 안내 처리 현황	439
4	진정사건 처리 현황	441

법령 · 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

1 2019. 11. 21.자 결정 【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】
 450

- [1] 국토교통부장관에게,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
- [2] 국토교통부장관에게, 변화한 가구구성, 주거여건,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하고,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의 구조·성능·환경 기준을 개정할 것
- [3] 국토교통부장관에게,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, 이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한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

2 2019. 12. 26.자 결정 【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개선 권고】
 469

보건복지부장관에게,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하여 현행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, 노인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사업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자살예방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

3 2020. 3. 27.자 결정 【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 배제 관련 제도 개선】
 475

피진정인(○○○○○교육감)에게, 교육전문직원(장학사·교육연구사)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계열 응시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

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

1 2020. 2. 26.자 결정 19진정0059900 【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】
 482

○○지방법원장에게,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

2 2020. 2. 26.자 결정 18진정0699200 【경찰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】 … 492

○○경찰서장에게, 피해자 이○○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피진정인 정○○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,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정○○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3 2020. 4. 7.자 결정 19진정0425200, 0502900 병합 【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】 …………… 508

법원행정처장에게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「외래어 표기법」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

4 2020. 4. 20.자 결정 19진정0466800, 0466801 병합 【정신병원의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】 …………… 523

보건복지부 장관에게,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규모, 벽면의 재질, 통풍 및 환기, 조명,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

차별행위 조사결정

1 2020. 3. 27.자 결정 20진정0059600 【병원 직원 채용에서의 종교 차별】 …… 531

피진정인에게, 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

2 2020. 3. 27.자 결정 19진정0564000 【프리랜서 형식의 근무를 이유로 한 경력인정 차별】 …………… 539

피진정인(○○ ○○대학교 병원장)에게, 피해자의 ‘사기업체 근무경력’ 유무에 대한 판단 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및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

3 2020. 3. 27.자 결정 19진정0593200 【비정규직 경력 불인정에 따른 고용 차별】
 548

피진정인(주식회사 □□□□대표이사)에게, 피해자의 이전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합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, 향후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

4 2020. 3. 27.자 결정 19진정0858000 【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원 임금 차별】
 555

- [1]** ○○○○○○○○장에게, 행정직·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·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직·기술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
- [2]** ○○○○○○○○회 이사장에게, 피진정기관의 예산을 심의·의결할 때 일반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

5 2020. 4. 28.자 결정 20진정0075600 【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차별】
 566

피진정인(○○○체육회장)에게, 진정인의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○○○체육회의 '경력환산 기준표'에서 규정하고 있는 '교직원'으로 보아 '갑경력'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

6 2020. 4. 28.자 결정 19진정0873300, 0883000 병합 【○○○○ ○○○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】 573

피진정인(○○○○○○○○○장)에게, '○○○○ ○○○ 과정' 지원 자격에 나이조건 이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,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

인권도서관 신착자료

1 국내서 단행본 579